

독일판례 1

인격권은 사후 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함부르크고등법 1989. 5. 8 자 결정

-3W 45/89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2 조

판시사정

말과 목소리 등 언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연극인의 인격권은 그의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격권은 그 외 이 예술적인 특성을 음성모사기의 도움을 받아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도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결정이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다. 지방법원이 본안판결을 종결한 이후에 독일민사소송법 제 91 조 a 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정당하다. 유명한 연극배우이자 극작가인 Heinz Erhardt 의 아들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인은, 가처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피신청인은, Heinz Erhardt 에게 독특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독특한 말투(예를 들면 「und noch'n Gedicht) 이는 꼭 같은 것이 하나 더 있구나 하는 의미임)를 삽입한 선전문구를 음성모사장치를 사용하여 마치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라디오 선전문구로 이용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은 그의 아버지의 인격권이 사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인격권은 그의 아들인 원고가 그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처분신청의 권리가 저작권법상의 근거로서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점이다.

1.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1 항에 의한 인격권의 법률적인 보호는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당원도 역시 위 견해에 따르고 있는 바이다. 오히려 일반적인 가치 및 존경청구권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어서 특히 사망한 사람의 계속적인 인생상은 적어도 심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부터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zur Rechtslage BGH, WRP 84,681,682- "Frischzellenkosmetik" 참조). 2. 이와 같은 점에서부터, 예술가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러한 민법상의 보호는 그 생존시에 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는 창작물들에 대하여도 미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야의 예술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 쓰여지거나 또는 말로 표현된 어구나 작품 및 예술가로서의 활동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Schack(GRUR85, 352, 356)가 주장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것이다. 인생의 모습과 필생의 작품과는 특히 예술가의 인격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 Heinz Erhardt 와 같이 특히 성공하여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격적인 특성을 얻게 된 예술가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Heinz Erhardt 는 단지 그에게만 독특한 언어 및 음성을 통한 연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금지청구권의 보호범위를 개개의 사건에 있어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존해 있는 예술가의 법적인 지위이다. 만약 Heinz Erhardt 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그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있어서 특징적인 언어요소를 광고방송에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특히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격권이 광고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될 것이 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격권을 그 총체적인 것으로서 보호해 오고 있다. 어떤 예술가가 이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Heinz Erhardt 의 경우에는 이 점은 서로 닮음이 없다.) 그의 동의도 없이 그의 이름이나 그의 사진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영업적인 이용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다시 명예의 훼손까지도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BGH, GRUR56, 427, 428-"Paul Dahlke", GRUR 79, 425, 427-"Fußball-spieler" 'GRUR 81, 846, 847-"Rennsportgemeinschaft" 참조). 이는 KUG 법 제 22 조에 의하여 보장된 초상권보호와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호는 Heinz Erhardt 의 특징적인 목소리 및 언어표현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인격권침해의 강도는 사진이나 이름의수단사용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금도 뒤떨어 지지 않는다. 모든 라디오 광고방송의 청취자에 있어서 (그 목소리가 모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의 예술가로서의 인격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위 광고방송은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노림으로써, 매력과 주의력을 끌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하다. 그의 인격을 개입시키는 데 대하여 그의 동의와 아울러 일정액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그리하여 이제는 위와 같은 보호가 사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느냐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당원은 바로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률은 포괄적이고도 사후에까지도 계속되는 초상권의 보호를 단지 시간적인 제한만을 가하여 인정하고 있다(KUG 522, Abs. 2)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격권 총의 하나의 부분권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이 초상권보호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미 본 바와 같이 성명권을 보호해 왔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러한 사고방식도 위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를 동일시함으로써 인하여, 위에서 본 영업적인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법적인 지위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어떤 언어예술가의 예술가적인 개성이 그의 사후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영업적인 모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독일기본법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그 예술가 자신의 가치 및 존경청구권이나, 또한 이러한 상업적인 이용가능성으로부터 그 상속인을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KUG 의 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호를 함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한계의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상업적인 광고에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음성 모사자들의 예술적인 활동을 제약하거나, 언론매체들의 보도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설명할 R 필요도 없을 것이다